

제2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12. 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2월 7일 14:00 ~ 14:54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의결 제342~355호, 보고 제57~58호)

유 재 훈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2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2년도 제2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41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공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감원 감독분담금 제도를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업계 협의 完) 등을 거쳐 수수료 성격을 강화하고, 업체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42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금보험
기금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실시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3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제344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제345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346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347호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348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349호 『한국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장폐지제도 정비 및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위험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거래소 소관 7개 규정의 개정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보도자료 배포 예정인지?

○ (보고자) 보도자료는 10월에 배포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0호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1호 『(주)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

○ (위원) 의견 없음.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1호 안전과 관련하여, (주)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전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및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개인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개인에 대해 신분제재(주의)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시 원안에 따라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행위자 2명에 대하여 개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2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재 적용중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92.5%를 2023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3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신한은행의 직원(1명)에 대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 의무 위반으로 주의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4호 『○○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미충족한 대주주에게 충족명령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에 반영해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5호 『신한카드(주) 등 8개사의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카드(주) 등 8개사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하는 내용

○ (위원) 금번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청하였다가 미지정된 기관의 경우 임원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것인데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는지?

- (보고자) 법령에서 임원 요건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하였음.
- (위원) 데이터결합은 해외에서는 일반기업에서도 보안만 지켜 주면 자유롭게 결합하면 되는데, 저희가 2년 전에 데이터 3법 개정 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데이터 전문기관제도를 도입하였음. 장기적으로는 진입요건을 금융회사 인허가 수준 보다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됨.
- (보고자)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향후에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57호 『2022년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2년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58호 『2021년 12월말 기준 신용정보회사의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정보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 최다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적격성 심사를 해서 부적격할 때는 시정조치나 공시 같은 명령, 중대할 때는 10% 이상 주식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의결권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임. 그런데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임. 이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개인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관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제도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음.

○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음. 이것도 제도개선 검토 시에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2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4분 폐회)